

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78
----------	-----

발의일자 : 2004. 10. 1.

발 의 자 : 정임식의원 외 5인

1. 개정이유

- 동 조례의 상위관련 법규중 지방공기업법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
- 동조례의 관련 규정을 관련법 조항과 맞게 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동조례 제5조제1항제5호중 “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”를 “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”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지방공기업법 관련 조문

4. 본 문 : 붙임

고성군의회 제 호

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중 “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”를 “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 안	개 정 안
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</p> <p>①(생략)</p> <p>1. ~ 4.(생략)</p> <p>5. <u>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</u>에 의한 지방공사·공단외의 출자·출연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,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</p>	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<신설 2002.3.25>

제77조의3 (설립)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(이하 "출자법인"이라 한다)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(이하 "출연법인"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(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, 사업성, 출자·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2.3.25]

제79조의2 삭제 <2002.3.25>